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소개

< 2022.5월 현재 >

## 1 설립목적

### □ 사회복지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 제 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다.

## 2 사업대상

### □ [종사자]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사회복지사법 제4조의3(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  
※ 보육교직원 포함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기관] 사회복지법인, 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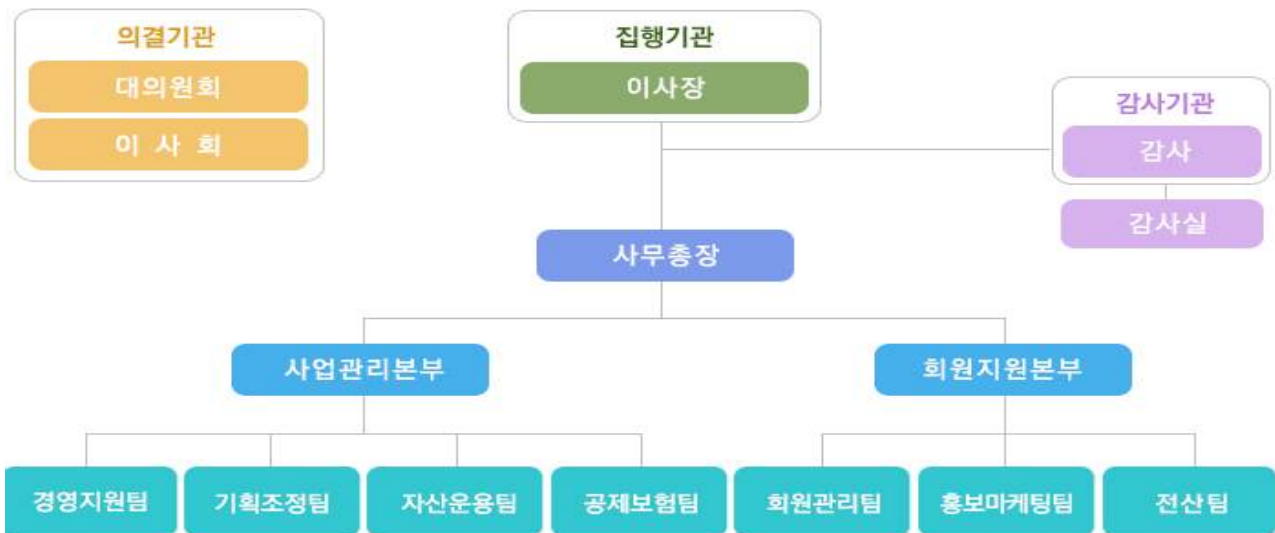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중략) 손해배상책임

### 3 조직현황

법률 제5조(조직)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 (사무국) 사무처, 2본부, 1실 7팀/ 현원 43명 (이사장 비상근)

\* 공제보험가입 상담을 위한 컨텍센터 운영 (7~8명/외주)



※ 조직성격 : 법정단체, 특수법인, 공직유관단체

### 4 사업개요

제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내용
1호	○ 적금식 장기저축급여사업
2호	○ 복지시설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제보험사업
4호	○ 무료안전점검, 문화공연, 실천가대상 시상 등
5호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보험료 50% 정부지원)

연월	내용
2011.0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2012.03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출범
2013.02	공제 보험사업 시작
2013.07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시작 (국고지원)
2014.06	복지시설 의무보험 및 안전관리 교육 시작
2015.04	사회복지실천가 힐링음악회 개최
2015.07	복지시설 무료 안전점검 사업 시작
2016.12	사회복지실천가대상 시상 시작
2018.02	보건복지부 주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순회교육 공동주관
2018.06	한국사회복지공제회 3기 출범 (제3대 강선경 이사장) 배우 이순재 홍보대사 위촉
2019.02	방한천공공복지대상 시상 시작
2019.06	사회복지국가책임제 실현 조직위원회 상임공동대표
2019.07	회원직영콘도(소노호텔&리조트) 운영 개시
2020.01	회원 복지급여금 제도 시행
2021.05	목돈수탁급여 상품 출시
2021.05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자산 1,000억원 돌파
2021.08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 연임 및 제4기 임원 출범
2021.12	공제회 설립 10주년 기념식
2022.05	사회복지종사자 1인 1계좌 갖기 캠페인 (더블업 이자) 시작

## 6 주요사업 및 실적

### ◇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 ○ 종사자 재산형성을 위한 저축

- 매월 일정액의 부담금 납부하여 만기 후 원금과 이자 수령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적용(이자소득세 0~2.05% 내외)

#### ※ 사회복지종사자 1인 1계좌 갖기 캠페인 (더블업 이자)

- 신규 가입자에 한하여 만기 시 이자를 두 배로 지급하는 이벤트 진행 중

구분	납입원금	+	만기이자	+	더블업이자 (Double-Up)	=	회원 수령액	=	금리효과
10년	① 1,200,000원 (월 1만원)		197,910원		197,910원		1,595,820원		연복리 5.5% (단리환산 및 세제혜택 적용 시 : 7.6%)
	② 1,200,000원 (월 2만원)		78,530원		78,530원		1,357,060원		
5년	③ 1,800,000원 (월 3만원)		117,800원		117,800원		2,035,600원		연복리 4.9% (단리환산 및 세제혜택 적용 시 : 6.1%)
	④ 2,400,000원 (월 4만원)		157,070원		157,070원		2,714,140원		
	⑤ 3,000,000원 (월 5만원)		196,340원		196,340원		3,392,680원		

### ◇ 국고보조사업

사업명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사업목적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해 불의의 상해사고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사업구분	(계정) 일반회계, (분야) 사회복지, (부문) 사회복지일반, (프로그램) 사회복지기반조성, (단위사업) 사회복지사업지원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사업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보험료 50% 국비지원

## ◇ 회원복지 및 시설지원

### □ 회원복지사업 (대상 : 장기저축급여 가입자)

#### ○ 복지급여금

구분	출산축하금	결혼축하금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정회원 자녀 출산 시	정회원 본인 혼인 시	정회원 본인 사망 시
지급금액	100,000원	100,000원	300,000원

#### ○ 회원 담보대여

대여이율	대여한도	대여기간
2.75%	장기저축급여 총 납입액의 80%범위 (최소 100만 원 이상, 최대 2천만 원까지. 10만원 단위)	1년 (연장가능)

#### ○ 포상사업(사회복지실천가대상)

회차	수상인원	상금 규모	시상식 진행 일자 / 장소
1회	27명	6,000만원	2016.12.16.(금) / 충무아트홀
2회	36명	8,300만원	2017.11.28.(화) / 서울여성프라자
3회	38명	8,800만원	2018.12.6.(목) / 백범김구기념관
4회	26명	8,200만원	2019.12.5.(목) / 한국경제신문 다산홀
5회	18명	9,000만원	2020.12.9.(수) / 온라인 시상식
6회	18명	9,000만원	2021.12.9.(목) / 온라인 시상식
7회	24명	12,000만원	미정 (2022.12.9. 예정)

※ 후보자 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자

### □ 시설지원사업

#### ○ 위기시설 긴급지원

연도	지원금액	사고 내용
2017년	900만원	충북 내 수해피해 시설 9개소 지원
2018년	100만원	충북 영덕군 태풍 콩레이 수해피해 시설 지원
2019년	300만원	강원 고성군 산불 화재피해 시설 지원
	300만원	인천 강화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화재피해 지원
2020년	1,000만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코로나19 성금지원
2022년	900만원	강원·경북울진 지역 산불피해 지원